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98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배준영 · 엄태영 · 김미애
한지아 · 이종욱 · 안철수
이상휘 · 권영진 · 김성원
김예지 · 박대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할 때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가 적은 시·군의 경우에는 시·도의회의원지역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나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이 일반 지역과 크게 다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확정으로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

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확정할 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하여는 인구 외에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 획정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수 및 확정 기준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④ (생 략)</p>	<p>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확정할 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하여는 인구 외에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 획정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수 및 확정 기준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